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8가단129870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든, 전지혜, 한광수

변론 종결 2019. 10. 4.

판결 선고 2020. 3.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 및 과학기술 서비스업,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방 및 케이스 제조,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향후 해외 바이어로부터 일정량의 CI) 제품(이하 '이 사건제품'이라 한다)을 발주 받으면 피고에게 위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9. 27. 위 협의를 구체화 하는 내용의 OEM 공급계약(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EM 공급계약(협약)서

제1조(목적)

본 공급계약은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2조에서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갑의 바이어, 딜러와 소비자들이 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 도모와 번영을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물품)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물품명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물품명 : C

2. 규격 : 갑이 정의한 규격

제3조(공급조건)

1. 을은 갑이 발주하는 대로 제품 및 포장 등에 갑의 상표, 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부착하여 생산된 제품의 전량을 갑에게만 공급한다.

3. 갑은 1차년도에 60,000개 이상의 제품을 을에게 최소 OEM생산 발주할 것을 보증하고 아래에 규정된 단가로 매수한다.

A. 단가 : 발주시 Purchase Order에 명시한다.

B. 최소발주량 : 60,000EA

4. 전항에 규정된 최소 구매물량 및 단가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주문 및 인도)

1. 갑은 본 계약기간 중 매 3개월 단위로 예상 발주계획서를 해당 기간 개시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전항의 예상 발주계획에 따라 을에게 개별 주문서를 내고 을이 동의하는 개별 주문서의 조건에 따라 물품을 주문한다.
3. 주문서에는 물품명, 규격, 수량, 인도시기, 인도수량 등을 명기 하여야 하며, 동 인도시기는 주문서 전달일로부터 최소한 4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6조(납품가격)

1. 제품의 납품가격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하며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대금지급)

본 계약의 상품대금은 주문 발주 후 7일 이내에 발주 금액의 30%를 현금으로 입금하며 을이 납품 후 갑이 검수 후 양품에 대해 매월 말일로 마감하고 이를 익월말에 현금으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증금)

을은 본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과의 합의에 따른 금액에 상응하는 계약 이행보증보험을 발행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에게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30일 전의 사전서면 통지를 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본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자신이 입은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에 걸쳐 최고를 해도 위반 사실이 시정되지 않을 때

제15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존속한다. 단 동기간의 만료 2개월 전에 어느 당사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동일기간 동안 자동 연장된다.

라.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7. 10. 31.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계약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양해각서에 불과하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발주를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 선급금인데2), 원고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지 못해 피고에게 이 사건제품의 생산을 발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품 60,000개를 개당 대금 10,000원으로정하여 사실상 발주를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이 사건 금원 180,000,000원(60,000개×10,000원×0.3)을 지급한 것이며, 이에 피고는 제품의 제작에 착수하여 이미 상당 부분 제작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금원은 이 사건 제품의 대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 설령 구체적인 원고의 발주가 없었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향후 원고의 발주가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제품에 대한 선급금으로써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실제 원고의 발주에 대비하여 제품생산에 위한 준비비용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에 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떠한 계약서 내지 협약서가 그 당사자들에게 법적구속력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양해각서에 불과한지는 개별 사안마다 그 계약서의 목적, 계약체결의 과정 외에 특히 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판단

먼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개월 단위로 예상발주계획서를 기간 개시 2개월 전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개별주문서를 내면 피고가 동의하는 개별주문서의 조건에 따라 제품을 주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 · 피고사이에 개별주문서가 전혀 작성된 바가 없는 점, 원 · 피고 사이에 제품의 납품가격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제품 60,000개는 1차년도에 원고가 피고에게 발주할 최소한의 양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의할 때,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하였을 경우에는 납품대금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증권이 발행,교부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품 60,000개의 발주 및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을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또 다른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에는 제품의 주문 및 가격, 생산한 제품의 인도 및 검수, 하자담보 책임 등에 대해 이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1차년도에 최소한 60,000개 상당의 제품을 발주할 것을 보증하고 있는 점(이에 피고는 위 제품의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제14조),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은 2년간 존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서면에 의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같은 기간 동안 자동 갱신되도록 하고 있는 점(제15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양해각서가 아닌 일정한 법적구속력을 갖는 계약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의 존속을 전제로 향후 원고의 발주에 따른 제품의 선금금에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3), 원고가 당초의 이 사건 계약 만료일인 2019. 9. 27.로부터 2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서면으로 갱신을 원하지 않음을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은 2019. 9. 27.로부터 2년간 자동 연장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를 보유할 권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우관제

- 1) 소변분석 의료기기이다.
- 2) 원고는 이와 함께 대여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년에 최소한 이 사건 제품 60,000개의 발주를 보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4조에 따라그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 4) 한편, 이 사건 계약 기간의 만료일까지 실제 원고의 발주가 없고, 더 이상의 계약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그 동안 피고가 원고의 발주가 있을 것을 신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부분 비용을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